24. 12. 16. 오후 2:23 인쇄

군사교육소집

개요	병역지정업체선정	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	편입	복무관리
실태조사 및 평가	군사교육소집	위반시 벌칙 규정		

군사교육소집

관련근거

병역법 제55조

병역법 시행령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

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

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고,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 무복무기간에 산입

군사교육소집 통지

대상선발: 편입일자 빠른 순,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

군사교육소집 제외

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

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

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

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(퇴영 포함)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

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(퇴영 포함)된 사람

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

군사교육소집시기: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
군사교육소집통지: 병역지정업체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

군사교육소집기간: 30일 이내(기초군사훈련 실시)

군사교육소집부대: 논산 육군훈련소 등

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

개요

전문연구요원/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선택하는 제도

신청방법

병무청홈페이지 \rightarrow 병무민원포털 \rightarrow 전문/산업 \rightarrow 전문연구/산업기능/승선 민원신청 \rightarrow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(공동인증서(구,공인인증서) 로그인)

본인선택 제외대상

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

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

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

24. 12. 16. 오후 2:23 인쇄

군사교육소집 유보 대상

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경우

전직대기 중인 경우(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)

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경우

30일 이상 병가 중일 경우

지방병무청 전화번호

지방청	전화번호	지방청	전화번호
서울지방병무청	02-820-4491	충북지방병무청	043-270-1351
부산·울산지방병무청	051-667-5238, 5254(승 선)	전북지방병무청	063-281-3158
대구·경북지방병무청	053-607-6281	경남지방병무청	055-279-9254
경인지방병무청	031-240-7282~4	제주지방병무청	064-720-3217
광주·전남지방병무청	062-230-4355	인천병무지청	032-454-2285
대전·충남지방병무청	042-250-4455	경기북부병무지청	031-870-0810
강원지방병무청	033-240-6255	강원영동병무지청	033-649-4216